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       |
|----------|-------|
| 의안<br>번호 | 10519 |
|----------|-------|

제안연월일 : 2017. 11. .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6년 11월 30일 문진국의원인 대표발의하고, 2016년 12월 22일 정부가 제출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7.2.13.)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7년 3월 22일 문진국의원인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이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7.9.14.)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2017.9.20)는 위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354회 국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2017.9.26)는 환경소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환경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소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하는 경우에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임차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8항 중 “기술지원”을 “기술지원 등”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구매”를 “구매·임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매하는”을 “구매하거나 임차하는”으로, “구매하여야”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으로, “구매하는”을 “구매하거나 임차하는”으로, “구매하도록”을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매”를 각각 “구매 또는 임차”로 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제24조의2의 제목 중 “구매계획”을 “구매·임차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행정기관등”을 “국가기관등”으로, “구매하려는”을 “구매하거나 임차하려는”으로,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구매·임차 계획(이하 “구매·임차계획”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

항 중 “행정기관등”을 “국가기관등”으로, “구매계획”을 “구매·임차계획”으로 한다.

제24조의3의 제목 중 “구매실적”을 “구매·임차 실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행정기관등”을 “국가기관등”으로, “구매계획”을 “구매·임차계획”으로, “구매실적”을 “구매·임차 실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기관등”을 “국가기관등”으로, “구매실적”을 “구매·임차 실적”으로 한다.

제24조의4의 제목 중 “구매촉진”을 “구매·임차 촉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구매촉진”을 “구매·임차 촉진”으로, “행정기관등”을 “국가기관등”으로, “구매실적”을 “구매·임차 실적”으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행정기관등”을 “국가기관등”으로 한다.

제24조의5 중 “행정기관등에게”를 “국가기관등에”로, “구매”를 “구매 또는 임차”로 한다.

제26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말소하려면”을 “말소하려는 경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은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같은 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5조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구매·임차계획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6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br/>                     ① ~ ⑦ (생략)<br/>                     ⑧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부착한 측정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 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총량관리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부착·가동할 수 있도록 <u>기술지원</u>을 할 수 있다.</p> <p>제24조(저공해자동차의 <u>구매</u> 등)<br/>                     ①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자동차를 새로 <u>구매하는</u>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 자동차를 <u>구매하여야</u> 한다.</p> <p>1. <u>행정기관</u><br/>                     &lt;신 설&gt;<br/>                     2. (생략)<br/>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u>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u></p> | <p>제16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br/>                     ① ~ ⑦ (현행과 같음)<br/>                     ⑧ -----<br/>                     -----<br/>                     -----<br/>                     -----<br/>                     -----<br/>                     -----<br/>                     -----<br/>                     -----<br/>                     ----- <u>기술지원 등</u> -----.</p> <p>제24조(저공해자동차의 <u>구매·임차</u> 등) ① -----<br/>                     -----<br/>                     -----<br/>                     -----<br/>                     -----<br/>                     -----<br/>                     ----- <u>구매하거나 임차하는</u> -----<br/>                     ----- <u>구매</u> -----<br/>                     ----- <u>하거나 임차하여야</u> -----.</p> <p>1. <u>국가기관</u><br/>                     2. <u>지방자치단체</u><br/>                     3. (현행 제2호와 같음)<br/>                     ② -----<br/>                     ----- <u>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u></p> |

정기관등”이라 한다) 외의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자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의2(저공해자동차의 구매계획)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려는 경우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저공해자동차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구매계획을 제출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4조의3(저공해자동차의 구매실적)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구매계획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실적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

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

-----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

③ ----- 구매 또는 임차----- 구매 또는 임차-----.

제24조의2(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계획) ① 국가기관등----- 구매하거나 임차하려는 ----- 구매·임차 계획(이하 “구매·임차계획”이라 한다)-----.

② ----- 국가기관등----- 구매·임차계획-----.

제24조의3(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실적) ① 국가기관등-- 구매·임차계획----- 구매·임차 실적-----

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4조의4(저공해자동차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업무평가 항목에 저공해자동차 구매실적의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의5(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환경부장관은 행정기관등에게 저공해자동차의 출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저공해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①·② (생략)  
③ 소유자가 폐차나 수출 등을

-----.

② ----- 국가기관등-----  
----- 구매·임차 실적-----  
-----.

제24조의4(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  
----- 구매·임차 촉진-----  
----- 국가기관등-----  
----- 구매·임차 실적-----  
-----.  
----- 국가기관등-----  
-----.

제24조의5(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 국가기관등에 -----  
-----  
----- 구매 또는 임차-----  
-----.

제26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단 신설>

- 1. ~ 3. (생략)
- ④ ~ ⑧ (생략)

제46조(과태료) ① (생략)

② 제25조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말소하려는 경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 삭제>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은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 3. (현행과 같음)
-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4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구매·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같은 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③ ~ ⑤ (생략)

2. 제25조제4항에 따른 배출가  
스저감장치의 부착의무나 저공  
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 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 ⑤ (현행과 같음)